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현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8918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1.

발 의 자 : 김 현 · 조계원 · 임오경
최민희 · 이건태 · 이정현
이기현 · 장종태 · 황정아
박해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,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,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·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그렇지만,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·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·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, 관련 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

인의 취업·재취업 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).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,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1. 고용노동부장관이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5조의2제3항제2호·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수집·보유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 관련 정보
 2. 지원 대상자의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 개발정보
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
- ② 제1항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

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및 요청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벌칙)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제13조의3(자료의 제공 요청 등)</u></p> <p><u>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고용노동부장관이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5조의2제3항 제2호·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수집·보유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 관련 정보</u> <u>2. 지원 대상자의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개발정보</u> <u>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</u> |

제13조의3(우수사례의 발굴·확
산) (생략)
<신설>

② 제1항의 업무에 종사하거나
종사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
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
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
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
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
는 아니 된다.

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요청
할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및
요청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의4(우수사례의 발굴·확
산) (현행 제13조의3과 같음)
제16조의2(벌칙) 제13조의3제2항
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
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